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업보고서 등에 ESG 공시 의무화 〉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38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ESG 공시 의무화	3
2. 업무보고서에 ESG 공시 의무화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민수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6. 20.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및 업무보고서를 각각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사업보고서등의 경우 주로 주권상장법인 등이 재무적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반면,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주에 관한 사항 등 업무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평가 지표로서 ESG(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환경 · 사회 · 기업지배구조)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내시장을 규율하는 현행법이 기업공시제도를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를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등과 업무보고서의 기재 대상에 ESG와 관련

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ESG 공시 의무화

□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관련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및 제160조).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③ ~ ⑦ (생략)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비재무적 지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 -----

기업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하여금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주로 회사의 사업, 소유관계, 재무적 사항 등으로, 그 내용에 허위·부실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 금융용어사전, 2024.8.14. 조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 가. 주권
 -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던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아니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됨.³⁾

[표 1] 현행법령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자본시장법(§159②)	자본시장법 시행령(§168③)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4-3①)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주식매수선택권 포함)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산정기준·방법 (보수 5억원 이상인 경우)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산정기준·방법 (보수 5억원 이상인 경우)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검토 서명 2. 회사의 개요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 회사에 관한 사항 4. 주주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금융위 고지사항	1. 사업의 내용 2.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3.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공시 사항 등의 진행·변경상황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다. 우발채무 등 라. 제재현황 마.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바.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사.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아. 자금의 사용내역 자.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집합투자 적용배제 요건 충족 여부 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관리업체 지정·취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카. 녹색기술·녹색산업 인증, 녹색기업 지정 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전환·상각 사유가 되는 가격·지표 ·단위·지수 현황 파. 파견근로자 현황 하.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감사위원회·회계 감사인 논의

- 3) 사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허위기재·미기재 시 「자본시장법」상 제재는 다음과 같음.
- 행정조치(§164):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경고·주의 등
 - 손해배상책임(§162): 증권 취득자 또는 처분자에게 손해 발생 시 사업보고서 관련 제출인·이사·작성자·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사 등
 - 과징금(§429): 전년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최대 20억원) 내에서 부과
 - 형사처벌(§444, §446):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제출)

□ 한편,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를 지칭하는 용어로,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요소를 의미함.⁴⁾

○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적 규제강화 및 투자기관의 ESG 정보공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기업의 ESG가 투자수익, 기업 가치 및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 더불어 ESG 공시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당국 또한 그 일환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⁵⁾(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발표⁶⁾한 바 있으며, 현재 공시기준, 대상기업, 도입시기 등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음.

□ 그 밖에 우리나라의 ESG 관련 공시는 현재 사업보고서 공시, 거래소 자율공시, 개별법에 따른 공시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4) ① 환경(E):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들이 포함되며,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② 사회(S):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며, 최근 인권, 안전·보건 등에 대한 이슈가 화두, ③ 지배구조(G):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및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영역으로 이사회의 다양성, 임원 급여, 윤리경영 및 감사기구 등이 강조.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2021.12.

5) 환경(E) 관련 기회·위기 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S) 이슈 관련 개선 노력 등 지속가능경영에 관련된 사항을 담은 보고서

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2021.1.14.)은 ①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②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 ③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④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정부부처 및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어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⁷⁾

[표 2] 국내 ESG 관련 공시 현황

구 분	내 용
사업보고서 공시	• 금융·조세·환경·노동·공정거래·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제3호라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3-1조 •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녹색경영 관련 사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제3호차목·카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4-9조 • 사업 관련 환경규제 준수사항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4-2-12조제4항 * 환경물질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한 정부 규제 준수사항, 향후 환경개선 설비에 대한 중요한 자본지출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그 추정치 •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관련 사항 - 「기업공시서식」 제11-4-10조 • 여성임원 현황 - 「기업공시서식」 제9-1-1조 중 여성임원 현황
거래소 자율공시	• 녹색경영정보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시행세칙 제8조제7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 시행세칙 제13조제12호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처분 등 녹색경영정보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가족친화 경영정보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제15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제14호 * 가족친화인증·취소, 가족친화법상 과태료 부과조치
개별법상 공시	•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따른 공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 환경보호, 자원절약,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계획, 성과에 관한 사항 등 공개 •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7) 국회입법조사처, 「기후공시 및 기후 관련 안건 주주총회 상정 의무화 규제 검토」, 2024.2.

□ 이에 개정안은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관련 사항’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한 개별 공시가 아니라 사업보고서에 직접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시채널의 일원화·체계화를 통해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ESG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여 적응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미국과 EU 등이 기후공시를 포함한 ESG 공시의무를 강화할 경우 앞으로 해당 국가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 등이 공시규제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예정⁸⁾이고, 향후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⁹⁾ 등에 따른 소비자 소송과 같은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보고서에 ESG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은 국내기업의 공시역량 강화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8) 한국거래소, “글로벌 ESG공시 논의동향 및 시사점”, 2023.5.

9)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면서도 마치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출처: 환경 용어사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서는 ESG 공시 의무대상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주권상장법인 등¹⁰⁾에게 ESG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공시대상 정보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특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공시대상 정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ESG 공시의무 대상 기업과 정보 범위의 적정성, 해외의 동향 및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내외 공시제도 도입 및 이행현황과 규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국제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공시 제도화의 움직임이 있으나, 대부분은 아직 제도를 마련 중이거나 시행 초기단계라는 점, 국내의 경우 ESG 공시 관련 제도를 논의하는 단계¹¹⁾이며, 향후 국내 기업의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11)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 도입시기를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지연 등을 감안하여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2023.10.16.)

- 이해관계자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현재 ESG 공시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 업무보고서에 ESG 공시 의무화

- 개정안은 업무보고서에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관련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 ----- ----- ----- ----- ----- -----.
<u><후단 신설></u>	<u>이 경우 업무보고서의 내용에는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비재무적 지표로서 대통</u>

현행	개정안
② ~ ⑤ (생략)	<u>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 업무보고서는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경영 및 재무현황 등 업무내용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감독목적의 보고서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내용·재무·영업·최대주주와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등이며,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¹³⁾

[표 3] 업무보고서 기재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36③)	금융투자업 규정(§3-66①)
1. 금융투자업자의 개요 2.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현황 4. 영업에 관한 사항	1. 감사인의 반기별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말한다.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13)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36③)	금융투자업 규정 (§3-66①)
5.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지점, 그 밖의 영업소와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투자자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9.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현황(장외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관련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10.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11.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4.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6.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사항 6의2. 집합투자업자(직전 분기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제5호의 위험관리정책 및 제6호의 내부통제정책 이행내역 7.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호에서 "유동화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등 매매 또는 중개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 7의2. 제2-24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24조제1항제4호가목의 구분 관리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별 운용내역 나. 제2-2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정한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의 내용과 준수 여부 7의3.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재산상의 이익 현황 8.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영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 또는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자: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

□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ESG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ESG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 관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업무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감독목적 보고서로 각 연도 업무 결과를 회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무제표로 구성되는바, 회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요소인 ESG에 관한 사항을 업무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하여 국·내외 공시제도 도입 및 이행 현황을 지켜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대부분이 비상장사이고 업무 성격상 직접적인 기후 연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와 같은 공시목적이 아닌 감독목적 보고서에 해당하므로 ESG 공시의무 부과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1